의 안 번 호	2239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2. 29.(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2. 29.(목)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3. 14.(목)

2. 제안설명 요지(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가. 제안이유

○ 2024. 6. 30일자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코자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 위탁사무의 내용

-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그 밖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위탁기간 : 2024. 7. 1. ~ 2029. 6. 30.(5년)

다.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동학)

○ 본 동의안은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임.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